

붙임 2

제출서류 검증기준

내용	확인방법	비고
학위	○ 발급기관에 온라인조회, 유선, 이메일 등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	○ 해외 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기관의 확인 절차로 대체할 수 있음 * 확인 기간이 임용(예정)일보다 지연되는 경우 임용을 우선 진행하고 허위로 판정될 경우 「채용규칙」 제16조(합격 취소)에 따라 조치
국가 자격증	○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 발급 관련기관에 온라인조회, 유선, 이메일 등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	
민간 자격증	○ 자격증을 발급한 민간기관에 온라인조회, 유선, 이메일 등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	
근무경력	○ 응시자로부터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·산재보험의 4대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을 제출받아 근무기관·근무기간 등을 경력 제출증명서와 비교 확인 ○ 위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온라인조회, 유선, 이메일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	○ 폐업회사의 경우 응시자로부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를 제출받아 근무기관의 경력 확인을 대체
확인절차 생략	○ 제출 서류가 원본이며 복사방지마크, 위변조방지마크 등 변조방지 기술에 이상이 없는 경우 ○ 확인이 불가하고 가산점 부여 등 주요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	